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3. 23.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2년 3월 10일

나. 발의자: 이용주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2년 3월 18일

라. 상정일자: 제2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2. 3.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용주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통·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4조, 안 제5조제2항~제4항)
- 통장추천심의위원회 사항 삭제(안 제5조의2)
-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안 부칙)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안건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에 맞게 통·반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발의된 개정 조례안임.

- 주요내용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통장 임명권이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변경되었으며 통장 임명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안 제4조 및 안 제5조제2항에서 제4항까지 통장 임명 관련 규정과 안 제5조의2의 통장추천심위위원회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 조례와 시행규칙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통·반장 임용과 관련하여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어 부칙에 시행일을 2022년 6월 1일부터로 정하여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보임.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행정동의 설치와 그 하부조직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제고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주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468 |
|----------|-----|

발의년월일: 2022년 3월 일

발의자: 이용주 의원 외 3명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통·반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내용을 정비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4조, 안 제5조제2항~제4항)

나. 통장추천심의위원회 사항 삭제(안 제5조의2)

다.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안 부칙)

3. 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2. 3. 8. ~ 3. 14.)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통·반의조직)”을 “(통·반의 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할하에 통”을 “관할 하에 통”으로, “관할하에 반”을 “관할 하에 반”으로 한다.

제3조 전단 중 “구청장”을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임무)”를 “(통·반장의 임무)”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월1회”를 “월 1회”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편의제공)”을 “(편의 제공)”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 행 | 개 | 정 | 안 |
|--------------------|---|--------------------|----|--|
| 제2조(통·반의조직) ① | 동의 관할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하에 반을 둔다. | 제2조(통·반의 조직) ① | -- | 관할하에 통----- 관할하에 반-----. |
| ②·③ | (생략) | ②·③ | | (현행과 같음) |
|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 통의 명칭과 구역은 구청장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 -- | ----- 영등포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 제4조(통장의 임기) |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삭제> | | |
|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 ① (생략) ② 통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통장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 |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1. | 해당 통의 관할 구역에 주민 등록을 둔 25세 이상 | | | |
| 2. | 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 |

3. 연임으로 인한 임기 만료 후
3년이 경과

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
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동
장이 위촉한다.

<삭 제>

④ 구청장은 통장을, 동장은 반
장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삭 제>

1. 타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
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
으켜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6. 삭 제

7. 행정구역 개편 또는 통·반
조정으로 통폐합할 때

8. 그 밖의 직무수행이 곤란하
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의2(통장추천심의위원회) ①

<삭 제>

동장이 추천할 통장후보자의 심
의·의결을 위하여, 동에 통장

| | |
|--|--|
| <p>추천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1. 11. 18.></p> | |
| <p>② 통장추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 으로 정한다.</p> | <p><삭 제></p> |
| <p>제7조(임무) ①·② (생략)</p> | <p>제7조(통·반장의 임무) ①·② (현 행과 같음)</p> |
| <p>제9조(통·반장회의) 동장은 <u>월1</u> <u>회</u>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p> | <p>제9조(통·반장회의) ----- <u>월 1회</u> ----- -----. ----- ----- -----.</p> |
| <p>제10조(편의제공) (생략)</p> | <p>제10조(편의 제공) (현행과 같음)</p> |